신안산대학교	학생지도위원회 규정	규 정 번 호	4-1-12
		제 정 일 자	1995. 3. 14.
		개 정 일 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

제1조(목적) 본 대학에서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.

1. 위원장 : 교무처장(당연직)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2. 위원(교원) : 전임교원 4인
3. 위원(직원) :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신안산대학교 지부의 조합원 1인
4. 간사 : 교무처 직원 1인 <개정 2019.11.14., 2023.3.30., 2024.3.20.>

제3조(소집) 위원장은 단독 소집권을 가지며,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09.5.20.>

제4조(성원 및 의결) 위원장 포함 3/5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, 의결은 성원위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 <개정 2009.5.20., 2019.11.14.>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
2. 학생사건,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
3. 학생회 및 학생 단체 활동의 지도에 관한 사항
4.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
5.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6. 교무처의 연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<개정 2019.11.14., 2023.3.30., 2024.3.20.>

제6조(간사의 직무)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소청 심의사항 자료작성 및 제출
2. 의결록 기록유지
3. 의견 부의
4.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<삭제><개정 2019.11.14., 2023.3.30., 2024.3.20.>

제7조(사무처리)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9.11.14., 2023.3.30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